

2007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신청요강

2007. 4.

한국학술진흥재단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규대비표

구분	2006년	2007년	비고
1. 지원예산	○ 2,900백만원(109과제)	○ 2,000백만원(71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 좌동 ○ 좌동 ○ 대학(교) 및 대학원 개설강의만 인정	
3. 지원대상	○ 보호학문에 적격한 시간강사	○ 좌동	
4. 지원형태규모 (년/과제당)	○ 연 2,800 만원 - 강의지원비 : 2,400만원 - 연구비 : 2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 만원	○ 연 2,800 만원 - 강의지원비 : 2,600 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 만원	
5. 지원기간	○ 1년	○ 좌동	
6. 심사절차	○ 요건심사⇒전공심사⇒종합심사	○ 요건심사⇒전공심사(적부및전공)⇒종합심사	
7. 연구결과 발표물제출	○ 1편 이상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 제적 수준(SCI&SCIE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1편 이상 -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요건 개선·완화 ○ 연구결과는 <u>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u>	

- 차 례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내용	1
1. 지원 분야 및 대상	1
2. 지원 예산	2
3. 지원 규모 및 기간	2
III. 신청	2
1. 신청자격	2
2. 신청기간	3
3. 신청방법	3
4. 온라인 신청절차.....	3
5. 신청 및 참여제한	4
IV. 심사 및 선정	6
1. 심사절차	6
2. 심사방법 및 내용	6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8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8
1. 연구비 지급	8
2. 연구비 관리	9
VI. 보고서 제출 및 관리	9
1.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 및 점검	9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0
VII. 간접연구비 지원	12
VIII. 기타사항	12
※ 붙임 1.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양식	
3. 강의·연구계획서 양식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
- 소외학문, 희귀학문 분야의 연구지속성 담보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

2. 지원방향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와 소외학문 및 희귀학문 분야에 대한 배려

II.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

나.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격한 시간강사 (신청자격 참조)

다. 지원형태

-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지원예산

- 신규과제 지원비 : 2,000백만원(71과제 내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1인당 연 2,800만원 이내

- 강의지원비 : 연 2,6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만원
 - ※ 강의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경우에만 인정됨
 - ※ 선정과제에 대해 소속기관에서는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 선정과제에 대해 소속기관에서는 강의료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함

나. 지원기간 : 1년

- ※ 연구개시일 : 9월 1일

III. 신청

1.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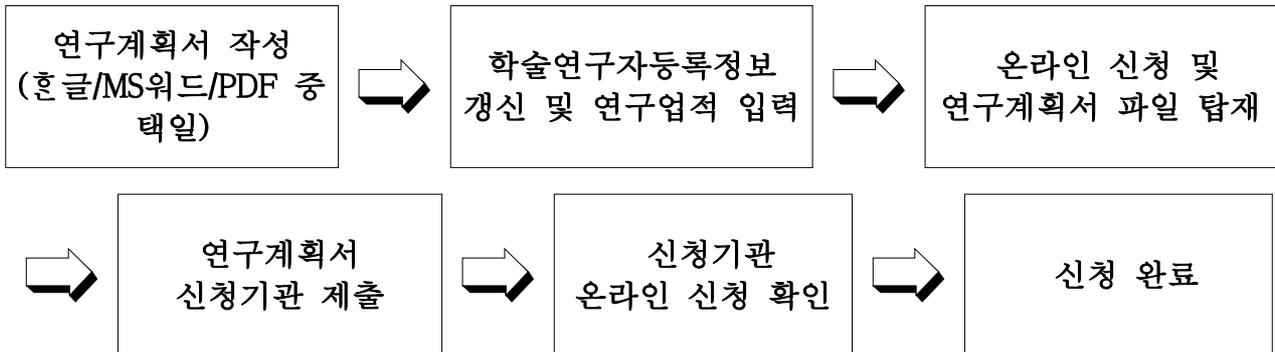
- 보호학문분야의 강의를 해당 대학의 2007년 2학기에 확정(예정)된 시간강사
- 보호학문분야연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 ※ 전임교원 제외
 - ※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
 - ※ 전일제(full-time) 취업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07. 05. 21(월) 09:00부터 05. 28(월)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강의·연구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강의·연구계획서 포함) 1부를 제출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2007. 05. 29(화) 09:00부터 05. 30(수)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강의·연구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5. 신청 및 참여제한

가. 연구비 신청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를 받고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나. 연구 참여제한

- 본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 과제수행의 참여율 계상 : 연구자의 연구참여율을 연구책임자로 참여시 30% 이상,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 20% 이상으로 산정하되, 학술연구구성사업에서의 참여율은 총 50%를 넘을 수 없음
-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기초연구과제(인문사회분야)에 인건비를 신청하는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또는 박사급연구원)으로 동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연구과제 선정 시 반드시 기초연구과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8.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과제, 우수논문사후지원과제, 우수학자(국가석학)지원(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과제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만료일이 2008.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인력방문연구지원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

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 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BK21 및 NURI사업 제외)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적부심사	○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	전공심사단
		전공심사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	
3 단계	종합심사		○ 최종 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단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보호학문의 적격여부 및 강의·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강의 내용	강의개설 의 필요성	희귀분야 강좌개설 필요성	○ 희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강의계획 서 평가	강의실적	○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
강의계획 및 연구 계획과의 연관성		○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	
연구 주제	창의성	주제의 창의성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방법의 창의성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학문적 가치	○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교육과의 연관성	○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및 실현 가능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 의 타당성	○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 보호학문의 적격여부 통과(pass) 과제에 한하여 실시함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최종 선정과제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가. 예비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다. 협약체결 : 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VI. 보고서 제출 및 관리

1.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및 점검

가. 제출대상 : 2007년도 선정 과제

나.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라. 제출서류

- 1) 2007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

- 2) 2008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
- 3) 연구진행상황보고서
- 4) 강의기관지원비 수령기관은 증빙자료
※ 관리지침 양식참조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요약문(국·영문)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파일 탑재
 - 연구결과 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나.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1)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

4)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연구책임자(단독 및 공동연구)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가 연구결과발표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다.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 「기술이전촉진법」 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전담조직’ 의 소유로 함
-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 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사회과학지원팀

Tel (02) 3460-5581~7 Fax (02) 3460-5579

- 전산관련 문의(온라인 신청 등) : 학술정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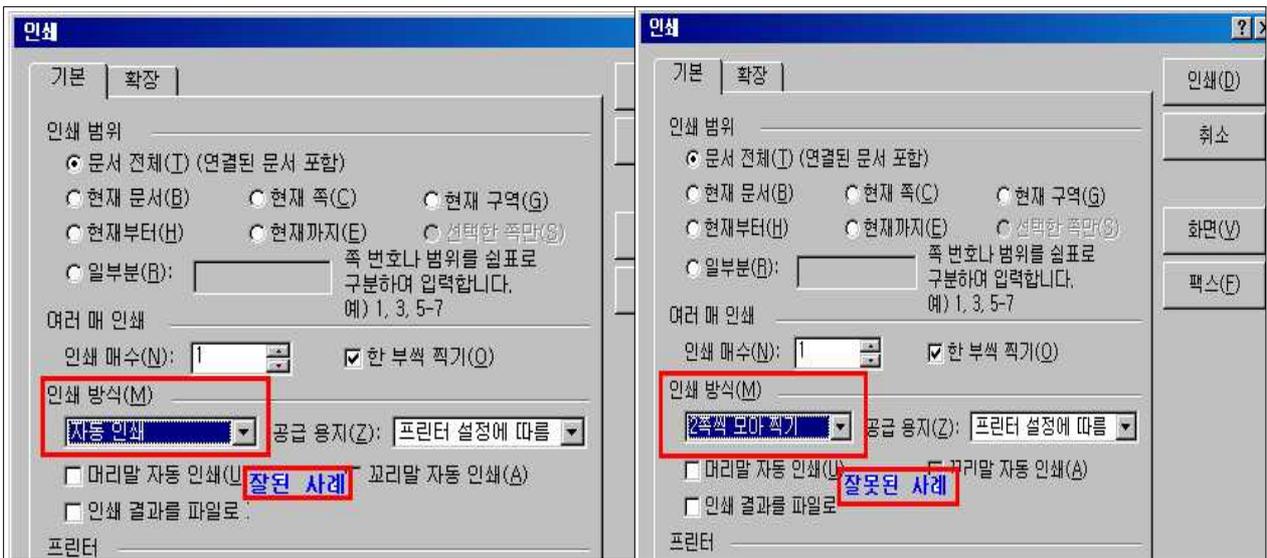
Tel (02) 3460-5543, 5545 Fax (02) 3460-5549

【붙임 1.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아래의 **"잘못된 사례"**와 같이 한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설정한 후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하여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탑재 후 반드시 탑재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잘된 사례

【붙임 1】

연구기간	인쇄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식재하고 작성하십시오)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식재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주검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추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추제,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잘못된 사례

【붙임 1】

연구기간	인쇄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식재하고 작성하십시오)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식재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주검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추제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추제,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II. 연구추진계획

* 다년과제의 경우에는 연가별로 따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년월	연구추진내용	비고
2007.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 신청기간에 따라 연가별로 작성

[MS Word]



잘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 택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	---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추진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여 초과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잘못된 사례

【문임 2】

연구기간	선 택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	---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 I.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추진 및 연구내용에 맞게 자유 형식으로 기술함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여 초과하지 않음.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II. 연구추진계획

* 다년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따로 따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년월	연구추진내용	비고
2007. 7		
8		
9		
10		
11		
12		
2008. 1		
2		
3		
4		
5		
6		

* 신청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작성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잘못된 사례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2007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강좌명	2007년 2학기 강좌명 :				
	2008년 1학기 강좌명 :				
강의내용	강의기관	대학(교)			학과 (학과장 :)
		전화 : ()		FAX : ()	
	강의학점	주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신청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전화	()	
<p>상기 신청자는 해당 보호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의욕이 왕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적격자로 추천하며, 상기 연구자가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에 선정될 경우 1년간 해당 강의를 배정할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7.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 학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과장 성명 : (인)</p>					

※ 추천인은 신청자가 강의와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해야 함 (전일제 (full-time) 취업자 제외)

【붙임 3. 강의·연구계획서】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강의·연구계획서

(사업명 :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좌명	2007년도 2학기 강좌명 : 2008년도 1학기 강좌명 :					
강의내용	강의학점		주 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 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 2008년 1학기 강좌배정은 강좌명이 변경가능하나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시 개설
확정 되어야 함

I.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1. 최종 학위논문

논문제목	
학 위 구 분	석사 (), 박사 (), 기타()

*기타란은 “특이한 기술”, “과정수료” 등의 사실을 기입 하십시오

-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반드시 본인이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II. 연구 및 강의실적

1. 연구실적

-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입력·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실적

강좌명	강의기관	기간	학점	주당강의시간	수강인원	과목구분	비고

- ※ 과목구분은 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중 택일하여 기재
- ※ 최근 3년간에 강의 실적만 기재 함 (2004년 1학기부터)

III. 강의 계획

- ※ 2007년2학기과 2008년1학기 강좌가 다를 경우에는 2개 학기의 강의계획을 작성함
- ※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

● 강좌명 :

- 1) 강좌개설의 목적
(보호학문으로서의 필요성)

- 2)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

3) 강좌 내용 및 방법

4)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

IV. 연구계획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IV.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학문발전 공헌도, 활용방안 등으로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연구업적 요약문 및 참고문헌 목록 제외)

※ 연구계획서 파일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합니다.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

V. 연구추진계획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고
2007.	9		
	10		
	11		
	12		

2008.	1 2		
2008	3 4 5 6 7 8		

※ 신청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